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25호(號) 1927(昭和 2)년 9월 27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04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86호(號) 조선총독부 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,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) 간(間) 여객 및 하물 연대운수규칙(旅客及荷物連帶運送規則) 중(中) 1927(昭和 2)년 10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9월 27일

조선총독 임시대리(朝鮮總督臨時代理)

육군대장(陸軍大將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4조(條) 아래[左]의 경우에서 참여자(參列者)가 왕복여행(往復旅行)을 한 때는 대인(大人)에 한(限)하여 일정(一定)한 할인증(割引證)을 수수(收受)하고 2, 3등(等) 여객운임(旅客運賃)의 5할(割)을 저감(低減)함.

1 관공아(官公衙), 관립(官立), 공립학교(公立學校), 감독관청(監督官廳)의 인가(認可)를 득(得)하여 설립(設立)한 사립학교(私立學校), 교육회(教育會) 또는 공익법인(公益法人)이 교육(教育)에 관한 이 분야 관계자[斯道關係者]의 대회(大會) 혹은 강습회(講習會)를 개최(開催)한 때

2 관공아(官公衙) 또는 공익법인(公益法人)이 감화(感化), 구제(救濟), 지방개량(地方改良)에 관한 이 분야 관계자[斯道關係者]의 대회(大會) 또는 강습회(講習會)를 개최(開催)한 때

제14조(條)의2 조선(朝鮮), 관동주(關東州)의 각지(各地)에 이주(移住)하는 이민여행(移民旅行)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(一定)한 할인증(割引證)을 수수(收受)하고 3등(等) 여객(旅客)운임(運賃)의 5할(割)을 저감(低減)함.

전항(前項)에 의한 여객운임(旅客運賃)의 할인(割引)은 이주지(移住地)에 이르는 순로(順路)¹⁾에 의한 편도(偏道) 1회한(回限)으로 함.

제26조(條)의2 제14조(條)의2에 규정(規定)한 이민(移民)의 수하물(手荷物)에 대하여는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] 제151조(條)에 규정(規定)한 운임(運賃)의 5할(割)을 저감(低減)함.

전항(前項)의 할인운임(割引運賃)의 최저액(最低額)은 15전(錢)으로 함.

제29조(條) 중(中) 「제144조(條)부터 제156조(條)까지」를 「제144조(條)부터 제152조(條)까지, 제154조(條)부터 제156조(條)까지」로 개정(改正)함.

1) 역자: 順路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경유하는 일정한 노선을 말한다.